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 학사지침」

2023. 6.

국립국제교육원

1. 개정이유

GKS 외국인 장학 사업 운영 과정에서 수학 대학, 장학생 등 사업 관계자들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 상황들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제도의 실효성 및 현실 정합성 제고 필요

2. 주요내용

가. 학위과정 장학생(경고 처분 학생 포함)에게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 실습과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로 및 취업에 필요한 인턴 참여 기회를 허용

나. 장학기간 이내 학위를 취득하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자에 한하여 귀국항공권을 지원하도록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함

※ 이 지침은 2024. 1. 1.부터 시행하고, 본 개정안 시행일 이전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귀국 신고를 연기한 장학생은 제14조제7항을 종전 규정 적용

다. 한국어연수과정 기간 동안 제한되었던 시간제 취업을 방학 기간 중에는 허용

라. 일시출국 허용 기간 초과(학기 중 최대 2주, 수학대학이 정한 방학기간 이내)에 대해 자격상실을 유지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

마.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았거나 그 외 범죄로 금고 또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학기 시작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자격상실 사유에 추가

바. 자격상실에 대한 조항 중 제1, 2, 4, 5호와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6조(징계의 사유) 제1, 2, 3, 4호를 반영하여 제13조(징계) 조항 신설

사. 휴학은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도 학위 취득 및 진로 탐색 등 개인적 사유도 가능하도록 완화하되, 학기 중 휴학은 종전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

아. TOPIK PBT 외 IBT, 말하기평가 등 시행됨에 따라 학위과정 진학 처리 시 TOPIK의 다양한 평가 점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TOPIK PBT 3급의 70% 기준에 해당하는 84점 표기 삭제

3.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 학사 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 학사 지침 제2조(한국어연수과정)</p> <p>②제1항을 충족하지 못한 장학생 중 TOPIK 3급 합격점의 <u>70%(84점) 이상</u>을 받고 한국어연수기관장의 입학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 승인을 얻어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기간을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p>	<p>■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 학사 지침 제2조(한국어연수과정)</p> <p>②제1항을 충족하지 못한 장학생 중 TOPIK 3급 합격점의 <u>70% 이상</u>을 받고 한국어연수기관장의 입학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 승인을 얻어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기간을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p>
<p>■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 학사 지침 제5조(휴학 신청) ①장학생은 <u>중대한 질병, 가정 사정, 본국의 긴급소환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려면 다음 증빙서류를 갖추어 수학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단서 사본 1부(질병휴학의 경우에 한함) 2. 휴학신청서 1부 3. 지도교수의견서 1부 <p>다만, 한국어연수 중인 장학생은 휴학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u>천재지변, 본국의 긴급소환,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대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u>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p>	<p>■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 학사 지침 제5조(휴학 신청) ①<u>한국어연수과정 장학생은 휴학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위과정 장학생은 학기 시작 전에 수학대학의 학칙에 따라 다음 증빙서류를 갖추어 휴학을 신청하고 수학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기 중 휴학은 본국의 긴급 소환, 가정 사정,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학신청서 1부 2. 지도교수의견서 1부 3. 진단서 사본 1부(질병휴학의 경우에 한함) <p>③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u>본국의 긴급 소환, 가정 사정,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대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u>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p>
<p>■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 학사 지침 제7조(일시출국 신청) ①한국어연수 기간 중의 일시출국은 불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출국 7일 전까지 일시출국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어연수기관장의 <u>허가를 받은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가족사망 등의 이유로 출국이 불가피한 경우</u> 일시출국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p>	<p>■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 학사 지침 제7조(일시출국 신청) ①한국어연수 기간 중의 일시출국은 불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출국 7일 전까지 일시출국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어연수기관장의 <u>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족사망 등의 이유로 출국이 긴급한 경우</u> 일시출국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1. 학기 중 <u>개인질병치료, 가족사망 등</u>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u>2주 이내</u></p> <p>2. 방학기간 중에는 소속 한국어연수기관의 방학기간 범위 내에서 <u>최대 4주 이내</u></p> <p>②학위과정 중에 일시출국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출국 7일 전까지 일시출국신청서를 제출하여 수학대학장의 <u>허가</u>를 받아야 하며, 가족사망 등의 이유로 출국이 불가피한 경우 일시출국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p> <p>1. 학기 중 학위 과정 연계 국제 행사 참여, <u>개인질병치료, 가족사망 등</u>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u>2주 이내</u></p> <p>2. 방학기간 중에는 수학대학이 정한 방학기간 범위 내</p>	<p>1. 학기 중에는 <u>본국의 긴급 소환, 가정 사정, 질병 치료 등</u>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u>최대 2주 까지</u> 일시출국 허용</p> <p>2. 방학기간 중에는 소속 한국어연수기관의 방학기간 범위 내에서 <u>최대 4주까지</u> 일시출국 허용</p> <p>②학위과정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출국 7일 전까지 일시출국신청서를 제출하여 수학대학장의 <u>승인</u>을 받아야 하며, 가족사망 등의 이유로 출국이 <u>긴급한</u> 경우 일시출국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p> <p>1. 학기 중 학위 과정 연계 국제 행사 참여, <u>본국의 긴급 소환, 가정 사정, 질병 치료 등</u>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u>최대 2주까지</u> 일시출국 허용</p> <p>2. 방학기간 중에는 수학대학이 정한 방학기간 범위 이내 일시출국 허용</p>
<p>■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 학사 지침</p> <p>제11조(경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원장이 해당 장학생에게 경고 처분한다</p> <p>2. <u>1년 한국어연수 후 TOPIK 3급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u></p> <p>4. 무단으로 일시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입국하지 않는 경우. 단 일시출국 시 제7조 제1항, 제2항의 출국허용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2조에 해당한다.</p> <p>5.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p> <p>(신설)</p>	<p>■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 학사 지침</p> <p>제11조(경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원장은 해당 장학생을 경고 처분한다</p> <p>(삭제)</p> <p>3. 무단으로 일시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내 입국하지 않는 경우. 단 일시출국 시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시출국 최대허용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2조제8항에 해당한다.</p> <p>4.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p> <p>5.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서 경고 처분의 의결을 받은 경우</p>
<p>■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 학사 지침</p> <p>제12조(장학생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다.</p> <p>1. <u>지원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u></p> <p>2. <u>교육원에 서약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u></p> <p>3. <u>교육원이 정한 학사행정 조치사항에 따르</u></p>	<p>■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 학사 지침</p> <p>제12조(장학생 자격상실)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원장은 해당 장학생을 자격상실 처분한다.</p> <p>(삭제) 제13조(징계)로 이동</p> <p>(삭제) 제13조(징계)로 이동</p> <p>1. <u>교육원의 시정명령 등 학사행정 조치사항에</u></p>

현 행	개 정 안
<p>지 아니한 경우</p> <p>4. 수학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 치활동을 한 경우</p> <p>5.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p> <p>6. 제2조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후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만, 한국어연수과정 1년 후 TOPIK 3급 합 격점의 <u>70%(84점)</u>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 으로 수학대학에서 진학을 허용한 사람, 제 2조의 ② 한국어연수과정 이수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사람 또는 제2조의 ② 한국어 추가 연수자로 추가 연수 후에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p> <p>7.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 등의 목적으로 출 신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한 경우</p> <p>8.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 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p> <p>9. 제11조의 1, 3, 4, 5호에 의거, 경고 3회 이 상을 받은 경우</p> <p>10. 중도 포기한 경우</p> <p>11. 한국어 연수과정 학생이 제7조 1항 1, 또 는 2호를 위반한 경우</p> <p>12. 학위과정 장학생이 제7조 2항의 출국허용 기간을 위반한 경우</p> <p>13. 제5조 3항에 명시된 휴학기간을 초과한 경 우</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따르지 아니한 경우</p> <p>2. 수학대학으로부터 제적처분을 받은 경우 <u>일부 수정 후 제13조(징계)로 이동</u> <u>(삭제) 제13조(징계)로 이동</u></p> <p>3. 제2조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후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만, 한국어연수과정 1년 후 TOPIK 3급 합격 점의 <u>70%</u>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으로 수학 대학에서 진학을 허용한 사람, 제2조제2항 한 국어연수과정 이수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사람 또는 제2조제2항 한국어 추가연수자로 추가 연 수 후에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예 외로 한다.</p> <p>4. <u>좌동</u></p> <p>5. <u>좌동</u></p> <p>6. 제11조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p> <p>7. <u>좌동</u></p> <p>8.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출국허용기간을 위 반한 경우. 다만, 교육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p> <p>9. <u>좌동</u></p> <p>10.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았거나, 그 외 범죄로 금고 또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p> <p>11. 학기 시작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국 하지 않는 경우</p> <p>12. 징계위원회에서 자격상실 처분의 의결을 받은 경우</p>
<p>■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 학사 지침 (신설)</p>	<p>■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 학사 지침 제13조(징계)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원장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 장학금 일</p>

현 행	개 정 안
	<p><u>시정지, 자격상실 등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정치활동을 하거나, 장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을 실추시킨 경우</u> <u>2. 절도, 폭력, 성폭행(성희롱, 성추행 포함), 폭언 등 타인에게 해를 가한 경우</u> <u>3. 학사지침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u> <u>4. 각종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u> <u>5. 교육원에 서약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u> <u>6.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u>
<p>■ 정부초청외국인 학부 장학생 학사 지침</p> <p>제13조(장학금 지급 및 수령)</p> <p>⑥제12조에 따라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u>교육원장이 인정하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중도 포기 등의 경우에는</u> 귀국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⑦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귀국 항공권과 귀국 준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수학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u> <u>2. 학위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u> 	<p>■ 정부초청외국인 학부 장학생 학사 지침</p> <p>제14조(장학금 지급 및 수령)</p> <p>⑥제12조에 따라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u>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u> 귀국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⑦다음 각 호의 <u>1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국 항공권과 귀국 준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수학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u> <u>2. 장학기간 내 학위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u> <u>3. 장학기간 이후에도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u>
<p>■ 정부초청외국인 학부 장학생 학사 지침</p> <p>제15조(현지지도)</p> <p>①교육원장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학기관의 장학생 관리 실태를 <u>점검하고</u> 현지지도할 수 있으며 수학기관은 관리 서류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p> <p>②수학기관장은 장학생이 건전한 면학과 내실 있는 유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u>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과 관련하여</u> 다음 각 호와 같이 <u>지도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생은 전공과목 수학에 정진하는 것을 모든 것에 <u>우선해야 한다.</u> 수학대학이 주관하는 전공과 연관된 연구·학술관련 시간제 취업 및 수학대학이 관리하는 근로장학생으로 <u>학교 내</u> 에서 시간제 	<p>■ 정부초청외국인 학부 장학생 학사 지침</p> <p>제16조(장학생관리·점검)</p> <p>①교육원장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학기관의 장학생 관리 실태를 <u>점검할 수 있으며</u> 수학기관은 관리 서류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p> <p>②수학기관장은 장학생이 건전한 면학과 내실 있는 유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u>시간제 취업과 관련하여</u> 다음 각 호와 같이 <u>관리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생은 전공과목 수학에 정진하는 것을 <u>최우선으로 한다.</u> 수학대학이 주관하는 전공과 연관된 연구·학술관련 시간제 취업 및 수학대학이 관리하는 근로장학생으로 <u>학교 내</u> 시간제 취업을 허용할

현 행	개 정 안
<p>취업을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p> <p>(신설)</p> <p>3. 제2호 외의 시간제 취업은 방학기간에만 허용할 수 있다. <u>다만, 제16조(경고)에 해당하는 장학생과 한국어연수과정 장학생은 시간제 취업을 허용하지 않는다.</u></p>	<p>수 있다.</p> <p>3. <u>수학대학장은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학생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현장 실습과 인턴 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u></p> <p>4. <u>제2호 및 제3호 외의 시간제 취업은 방학기간에만 허용할 수 있다. (단서조항 삭제)</u></p>

부 칙

이 지침은 2023. 6. 5. 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제7항은 2024. 1. 1.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안 시행일 이전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귀국 신고를 연기한 장학생은 제14조제7항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붙임 1.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 학사지침

개정 2023. 5. 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건전한 면학과 유학 생활의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1(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학기관(장) : 장학생이 수학하는 대학(총장) 또는 한국어연수기관(장)
2. 수학대학(장) : 장학생이 수학하는 대학(총장)

제2조(한국어연수과정) ①장학생은 학위과정 입학 전에 1년의 한국어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능력시험(이하 'TOPIK'이라 한다) 3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TOPIK 5급 이상을 취득한 장학생은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의무가 면제되며, 수학대학의 학사일정에 맞추어 진학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충족하지 못한 장학생 중 TOPIK 3급 합격점의 70% 이상을 받고 한국어연수기관장의 입학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 승인을 얻어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기간을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장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장학금 지급 세부 지침에 따른 어학 연수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④장학생이 한국어연수과정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한국어연수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의사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교육원장은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장학생에게 별도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학위과정 수학) ①장학생은 교육원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 학위과정에 입학 지원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학생은 수학대학이 정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장학생은 수학대학의 학칙에 따라 성실히 수강하여야 한다.

④장학생은 교육원장으로부터 최종입학대학을 승인받은 이후 수학대학을 변경할 수 없다.

⑤수학기관장은 매학기 종료 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생의 수학 상황을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한국어연수과정 장학생 : 성적 및 수료 상황

2. 학위과정 장학생 : 성적 및 학위취득, 수료 상황

⑥장학생은 최종 수학완료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학종료보고서 1부

2. 지도교수의견서 1부

⑦장학생은 승인받은 최종입학학과의 폐과 또는 전공 적합성이나 진로 재설계 등의 사유로 학과 변경을 원할 경우 수학대학의 학칙에 의거 학과를 변경할 수 있으며, 수학대학장은 장학생의

학과 변경 처리 결과를 처리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교육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장학생에게 별도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연락처 변경 신고) 장학생은 연락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연락처 변경신고서를 갖추어 수학기관을 경유하여 교육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휴학 신청) ①한국어연수과정 장학생은 휴학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위과정 장학생은 학기 시작 전에 수학대학의 학칙에 따라 다음 증빙서류를 갖추어 휴학을 신청하고 수학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기 중 휴학은 본국의 긴급 소환, 가정 사정,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1. 휴학신청서 1부
2. 지도교수의견서 1부
3. 진단서 사본 1부(질병휴학의 경우에 한함)

②수학대학장은 장학생의 휴학 처리 결과를 처리 후 1주 이내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본국의 긴급 소환, 가정 사정,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대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복학 신고) ①복학을 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휴학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수학기관의 학칙에 따라 복학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수학기관장은 장학생의 복학 처리 결과를 처리 후 1주 이내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일시출국 신청) ①한국어연수 기간 중의 일시출국은 불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출국 7일 전까지 일시출국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어연수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족사망 등의 이유로 출국이 긴급한 경우 일시출국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1. 학기 중에는 본국의 긴급 소환, 가정 사정, 질병 치료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최대 2주 까지 일시출국 허용
2. 방학기간 중에는 소속 한국어연수기관의 방학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4주까지 일시출국 허용

②학위과정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출국 7일 전까지 일시출국신청서를 제출하여 수학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족사망 등의 이유로 출국이 긴급한 경우 일시출국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1. 학기 중에는 학위과정 연계 국제 행사 참여, 본국의 긴급 소환, 가정 사정, 질병 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주까지 일시출국 허용
2. 방학기간 중에는 수학대학이 정한 방학기간 범위 이내 일시출국 허용

제8조(재입국 신고) ①일시출국 기간이 종료되어 재입국한 장학생은 재입국 후 7일 이내에 출입국 증빙서류 1부를 갖추어 수학기관장에게 재입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수학대학은 매학기 방학전 일시출국신청서를 수합하여 승인처리하고, 방학 종료 후 출입국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무단출국 및 출국허용기간 미준수 등 학사지침 위반자에 대해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귀국 신고) ①장학기간이 종료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포기하고 귀국하려는 장학생은 소속 수학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학기관장은 장학기간 종료 또는 귀국 30일 전까지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학생이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한국 내에 체류하려면 장학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까지 귀국 신고를 연기할 수 있다.

제10조(장학기간) ①장학생의 장학기간은 제2조에 의한 한국어연수 기간 외에 학과의 수업 연한에 따라 학부과정은 4~6년, 전문학사 과정은 2~3년 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장학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장학기간에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경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원장은 해당 장학생을 경고 처분한다.

1. 한국어연수 기간 중 무단결석일이 연속하여 3일 이상 또는 월 누계 5일을 초과할 경우
2. 학기 단위로 학위과정의 평점평균(백분위 환산점수)이 70점/100점 미만인 경우
3. 무단으로 일시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내 입국하지 않는 경우. 단 일시출국 시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시출국 최대허용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2조제8호에 해당한다.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5.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서 경고 처분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12조(장학생 자격상실)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원장은 해당 장학생을 자격상실 처분한다.

1. 교육원의 시정명령 등 학사행정 조치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수학대학으로부터 제적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조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후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만, 한국어연수과정 1년 후 TOPIK 3급 합격점의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으로 수학대학에서 진학을 허용한 사람, 제2조제2항 한국어연수과정 이수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사람 또는 제2조제2항 한국어 추가연수자로 추가 연수 후에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4.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 등의 목적으로 출신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한 경우
5.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제11조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7. 중도 포기한 경우
8.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출국허용기간을 위반한 경우. 다만, 교육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9. 제5조제3항에 명시된 휴학기간을 초과한 경우
10.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았거나, 그 외 범죄로 금고 또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11. 학기 시작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국하지 않는 경우
12. 징계위원회에서 자격상실 처분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13조(징계)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원장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 장학금 일시정지, 자격상실 등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정치활동을 하거나, 장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을 실추시킨 경우
2. 절도, 폭력, 성폭행(성희롱, 성추행 포함), 폭언 등 타인에게 해를 가한 경우

3. 학사지침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각종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
5. 교육원에 서약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4조(장학금 지급 및 수령) ①장학금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②장학생은 장학금 지급 및 수령과 관련하여 교육원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 ③장학생이 제2조의 한국어연수 기간 중에 일시출국하면 그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④장학생이 제3조의 학위과정 중 학기당 30일을 초과하여 일시출국하면 30일 초과분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⑤제5조의 휴학기간에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수학기관장이 장학생의 부득이한 국내 체류로 생활비 지급이 불가피함을 신청하여 교육원장이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 ⑥제12조에 따라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귀국 지원을 할 수 있다.
- ⑦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국 항공권과 귀국 준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수학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장학기간 내 학위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 장학기간 이후에도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 ⑧장학생이 최초 수학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수학을 포기하면 기존에 받은 장학금을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본국의 소환, 중대한 질병 등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준용규정) 본 지침에 규정된 이외의 경미한 학사에 관한 사항은 장학생의 소속 수학기관의 학칙을 준용한다.

제16조(장학생관리·점검) ①교육원장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학기관의 장학생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수학기관은 관리 서류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②수학기관장은 장학생이 건전한 면학과 내실있는 유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제 취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장학생은 전공과목 수학에 정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2. 수학대학이 주관하는 전공과 연관된 연구·학술관련 시간제 취업 및 수학대학이 관리하는 근로 장학생으로 학교 내 시간제 취업을 허용할 수 있다.
 3. 수학대학장은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학생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현장 실습과 인턴 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
 4. 제2호 및 제3호 외의 시간제 취업은 방학기간에만 허용할 수 있다.

제17조(장학생 관리실적 평가) 교육원장은 수학기관에 대하여 장학생 관리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학대학 선정 및 장학생 위탁인원 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9. 6. 20.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0. 6. 22.부터 시행하며, 장학기간중인 장학생 전체에 적용된다.

이 지침은 2020. 8. 13.부터 시행하며, 장학기간중인 장학생 전체에 적용된다.

이 지침은 2022. 3. 1.부터 시행하며, 장학기간중인 장학생 전체에 적용된다.

이 지침은 2023. 3. 1.부터 시행하며, 장학기간중인 장학생 전체에 적용된다.

이 지침은 2023. 6. 5. 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제7항은 2024. 1. 1.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안 시행일 이전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귀국 신고를 연기한 장학생은 제14조제7항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붙임 2.

Regulations for GKS Award Recipients (Undergraduate Degree Program)

Amended on May. 18, 2023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ese Regulations is to establish the necessary provisions to ensure a sound academic environment and promote faithful study among undergraduate award recipients of the Global Korea Scholarship (GKS) Program ("GKS award recipients").

Article 1-1 (Definitions of Terms) The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ese Regulations are as follows:

1. (President of) Institution: (President of) the university or (President of) the Korean language institution where the GKS award recipient is enrolled
2. (President of) University: (President of) the university where the GKS award recipient is enrolled

Article 2 (Korean Language Program) ① GKS award recipients must complete a one-year Korean language program and achieve a level of three (3) or higher on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before entering a degree program. However, GKS award recipients who have achieved a TOPIK level of five (5) or higher are exempt from the obligation to complete the Korean language program and may proceed to the degree program in accordance with the academic schedule of the university.

② GKS award recipients who have not met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 but have received a score of 70% or higher of the passing score for the TOPIK level three (3), may extend the Korean language program for a one-time-only period of six (6) months with the permission of the NIIED President and admission approval from the president of the Korean language institution.

③ GKS award recipients requiring additional language training pursuant to paragraph 2 must bear fifty percent (50%) of the language training tuition as provided for in the Detailed Guidelines for Scholarship Payment of the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NIIED").

④ If a GKS award recipient has an unavoidable reason to be absent during the

Korean language program, the student may obtain permission in advance from the president of the Korean language institution. The GKS award recipient must submit an absence confirmation form with supporting documents such as a medical certificate, and may submit them afterwards only in unavoidable circumstances.

⑤ The NIIED President may grant additional scholarships to GKS award recipients who have excellent Korean language skills.

Article 3 (Degree Program Regulations) ① GKS award recipients must apply for admission to a degree program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set by the NIIED President, and must report the admission results.

② GKS award recipients must register within the registration period set by the university.

③ GKS award recipients must attend classes faithfully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university.

④ GKS award recipients cannot change the university finally approved from the NIIED President.

⑤ The president of institution where the student is enrolled must report the academic status of GKS award recipients to the NIIED President at the end of each semester.

1. Korean language program: grades and completion status, etc.

2. Degree programs: grades, degree acquisition, completion status, etc.

⑥ Upon completion of the degree program, GKS award recipients must submit the following documents to the NIIED President:

1. End of Study Report; and

2. Opinion of Academic Advisor.

⑦ If a GKS award recipient wishes to transfer or change the department due to department closures, major suitability, or career path redesign, the student may do so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of their university.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must report the results of the GKS award recipient's department change to the NIIED President within one (1) month of the change being made.

⑧ The NIIED President may grant additional scholarships to outstanding GKS award recipients based on their academic achievements.

Article 4 (Reporting Contact Information Changes) GKS award recipients must report to the NIIED President through the institution immediately upon any changes to their contact information by submitting a Notification of the Change of Address

and Contact.

Article 5 (Application for A Leave of Absence) ① GKS award recipients in the Korean language program cannot take a leave of absence except for unavoidable circumstances, and must obtain approval from the NIIED President. GKS award recipients in degree programs must apply for a leave of absence by submitting the following documents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university before the start of the semester and obtain approval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However, taking a leave of absence during the semester is limited to unavoidable reasons such as emergency summoning to one's home country, family circumstances, serious illness, etc., and relevant supporting documents must be submitted when applying for leave of absence.

1. Application for Leave of Absence
2. Opinion of Academic Advisor
3. A medical diagnosis report (only for cases of taking a leave of absence due to illness)

②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must report the result of the GKS award recipient's leave of absence to the NIIED President within one (1) week after the leave of absence being processed.

③ The period of leave of absence cannot exceed one (1) year. However, in cases of emergency summons to their home country, family circumstances, or serious illness, which are approv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an additional extension may be granted for up to one (1) year.

Article 6 (Declaration of Return) ① GKS award recipients who wish to return to school must submit the application for re-enrollment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of the university at least one (1) month prior to the end of the leave of absence.

② The president of the institution must report the result of the GKS award recipient's return to the NIIED President within one (1) week after the return was processed.

Article 7 (Application for Temporary Departure) ① Temporary departure during the Korean language program period is not allowed. However, in case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GKS award recipient may apply for temporary departure up to at least seven (7) days prior to the planned departure date by submitting an application form and supporting documents, and must receive approval from the

Korean language institution. If there is an urgent need for departure, such as a family member's death, the student may apply until the date of departure.

1. During semesters, a GKS award recipients are allowed to temporarily leave Korea in the case of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urgent summons from their home country, family matters, or medical treatment for up to two (2) weeks.
2. During vacation periods, a GKS award recipients are allowed to temporarily leave Korea for up to four (4) weeks within the vacation period of the affiliated Korean language institution.

② In case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 GKS award recipient enrolled in a degree program may apply for temporary departure up to at least seven (7) days prior to the planned departure date by submitting an application form, and must receive approval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If there is an urgent need for departure, such as a family member's death, the student may apply until the day of departure.

1. During semesters, GKS award recipients are allowed to temporarily leave Korea in the case of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events related to the degree program, urgent summons from their home country, family matters, or medical treatment for up to two (2) weeks.
2. During vacation periods, GKS award recipients are allowed to temporarily leave Korea within the range of the vacation period designated by the university.

Article 8 (Declaration of Re-entry) ① A GKS award recipient who has returned after temporary departure must report their re-entry to the the president of the institution within seven (7) days of their re-entry, by submitting a certificate of Entry & Departure.

② The president of the institution shall collect and process the applications for temporary departure each semester, and check the arrival and departure documents after the vacation period to report any violators of GKS regulations, such as those who left without permission or those who exceeded the allowed period of temporary departure, to the NIIED President.

Article 9 (Reporting of Departure) ① GKS award recipients who wish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at the end of the scholarship period or withdraw from their scholarship due to unavoidable reasons must report to their affiliated institution. The president of the institution must report to the NIIED President within thirty (30) days before the end of the scholarship period or before the student's

departure.

② If a GKS award recipient cannot obtain a degree within the scholarship period and plans to stay in Korea to achieve the degree, the student may postpone their return declaration for up to twelve (12) months after the end of the scholarship period for a bachelor's (associate) degree program.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must report the postponement of the return declaration to the NIIED President at least thirty (30) days before the end of the scholarship period

Article 10 (Duration of Scholarship) ① The duration of scholarship for GKS award recipients shall be two (2) to three (3) years for associate degree program, four (4) to six (6) years for bachelor's degree program, depending on the length of the relevant department's academic program, in addition to the period of Korean language program under Article 2.

② The duration of scholarship in paragraph 1 cannot be extended, and any periods of leave of absence are not included in the duration of scholarship.

Article 11 (Warnings) If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pply, the NIIED President shall issue a warning to the GKS award recipient.

1. If a GKS award recipient has an unexcused absence for three (3) consecutive days or a total of five (5) days in a month during the Korean language program;
2. If a GKS award recipient has a score of less than seventy (70) out of one hundred (100) in a degree program's semester GPA (converted to percentile score);
3. If a GKS award recipient leaves Korea without permission or fails to enter Korea during the permitted period; However, if the GKS award recipient violates the maximum allowable period of temporary departure under Article 7, paragraphs 1 and 2, it falls under Article 12(8).
4. If a GKS award recipient violates Article 16, paragraph 2;
5. If a GKS award recipient receives a warning disciplinary action from the GKS Award Recipient Disciplinary Committee ("Disciplinary Committee").

Article 12 (Disqualification of Scholarship Student) If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pply, the NIIED President shall take measures to disqualify the GKS award recipient.

1. If the GKS award recipient fails to comply with academic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corrective orders from the NIIED;

2. If the GKS award recipient gets expelled from the university;
3. If the GKS award recipient fails to obtain TOPIK level three (3) or higher after completing the Korean language program pursuant to Article 2; However, those who fall under the following are exempt: those who have been allowed to enroll in a university after scoring more than seventy percent (70%) of the passing score for TOPIK level three (3) after one (1) year of Korean language training, those who have been approved for an extension of the Korean language training period under Article 2, paragraph 2, and those who have acquired a score of TOPIK level three (3) or higher after additional training as a Korean language learner under Article 2, paragraph 2;
4. If the GKS award recipient departs to the country of origin or a third country for the purpose of credit exchange with a foreign university;
5. If the GKS award recipient does not submit the application for re-enrollment without justifiable reasons after the end of the leave of absence period;
6. If the GKS award recipient receives a warning three (3) or more times according to Article 11;
7. If the GKS award recipient withdraws from the GKS Program;
8. If the GKS award recipient violates the permitted period of departure under Article 7, paragraphs 1 and 2; However, if the NIIED President recognizes that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disciplinary action may be taken through the decision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9. If the GKS award recipient's leave of absence exceeds the period specified in Article 5, paragraph 3;
10. If the GKS award recipient is subjected to fine or a heavier punishment for a sexual offense or if the student is subjected to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for other crime;
11. If the GKS award recipient does not enter Korea even after the start of the semester without justifiable reasons;
12. If the GKS award recipient receives a disqualifying disciplinary action from the Disciplinary Committee.

Article 13 (Discipline) If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pply, the NIIED President may impose disciplinary measures, such as a warning, temporary suspension of the scholarship, or disqualification, on the GKS award recipient through the decision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1. If a GKS award recipient causes damage to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Republic of Korea by engaging in political activities or acting outside the scope of their scholarship status;
2. If a GKS award recipient causes harm to others by committing theft, assault, verbal abuse, and sexual assault (including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misconduct);
3. If a GKS award recipient violates academic regulations or laws;
4. If a GKS award recipient has falsified any documents or if it turns out that submitted documents contain incorrect information;
5. If a GKS award recipient has violated the pledge to the NIIED;
6. If a GKS award recipient commits any act that damages the dignity of a scholarship student.

Article 14 (Payment and Receipt of Scholarships) ① Matters concerning the payment and receipt of scholarships shall be determined separately by the NIIED President.

② GKS award recipients must follow the guidelines established by the NIIED President regarding the payment and receipt of scholarships.

③ If the GKS award recipient leaves Korea temporarily during the Korean language training period pursuant to Article 2, no living expenses will be paid during the temporary period of absence.

④ If the GKS award recipient leaves Korea temporarily for more than thirty (30) days during each semester of the degree program pursuant to Article 3, living expenses will not be paid for the period exceeding thirty (30) days.

⑤ No living expenses shall be provided during the period of leave of absence pursuant to Article 5. However, if the GKS award recipient is unavoidably required to stay in Korea and the NIIED President recognizes the need for the provision of living expenses, the living expenses may be provided.

⑥ If the GKS award recipient loses their scholarship status under Article 12, no scholarship will be paid. However, if the NIIED President recognizes that there are reasons beyond the GKS award recipient's control, support for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may be provided.

⑦ If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pply, the GKS award recipient shall not be provided with a return ticket or allowance for return preparation.

1. If the GKS award recipient does not submit the End of Study Report;
2. If the GKS award recipient fails to obtain a degree during the duration of scholarship;

3. If the student continues to stay in Korea after the duration of scholarship;
- ④ If the GKS award recipient withdraws from studying within three (3) months after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the student shall return all the scholarship funds received up to that point. However, if the NIIED President recognizes that there are unavoidable reasons such as natural disasters, summons from their home country, or serious illnesses, exceptions may be made.

Article 15 (Provisions to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he regulations of the academic institution where the GKS award recipient is enrolled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atters related to academic affairs not specified in these Regulations.

Article 16 (Management/Inspection of GKS Award Recipients) ① The NIIED President shall periodically or as needed, inspect the management status of GKS award recipients at the institution, and may conduct on-site inspections. The institution shall actively cooperate with such inspections, such as submitting managed documents, etc.

② The president of the institution must manage the following subparagraphs related to part-time employment, so that GKS award recipients can pursue sound academic learning and meaningful study in Korea.

1. The GKS award recipient must give top priority to studying the major program.
2. GKS award recipients can be allowed to engage in on-campus part-time jobs related to their majors such as research activities or other academic endeavors hosted by the university and can participate in on-campus work-study programs which are arranged, managed and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university; and
3.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may allow GKS award recipients to participate in field training related to the degree program and internship activities for their career and employment within the scope that does not affect their academic progress; and
4. The GKS award recipient may receive approval for part-time jobs not pursuant to subparagraphs 2 and 3 only during the vacation period.

Article 17 (Evaluation of Management of GKS Award Recipient) The NIIED President may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institution in managing GKS award recipients and may reflect the results in the selection of universities and the assignment of GKS award recipients.

Addenda

These Regulations shall be effective from Jun. 20, 2019.

These Regulations shall be effective from Jun. 22, 2020, and will apply to all GKS award recipients during their scholarship period.

These Regulations shall be effective from Aug. 13, 2020, and will apply to all GKS award recipients during their scholarship period.

These Regulations shall be effective from Mar. 1, 2022, and will apply to all GKS award recipients during their scholarship period.

These Regulations shall be effective from Mar. 1, 2023, and will apply to all GKS award recipients during their scholarship period.

These Regulations shall be effective from Jun. 5, 2023.

However, Article 14, paragraph 7 shall be effective from Jan. 1, 2024.

For GKS award recipients who have postponed their return declaration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a degree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revisions of these Regulations shall be subject to the previous provisions of Article 14, paragraph 7.

These Regulations for GKS Award Recipients wer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nd translated to English.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in interpretation, the Korean version of these Regulations shall prevail.